

제27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 
제 1차 정례회, 2021. 6.10(목)10:00

고령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결정(변경) “안” 에 대한 의견제시

# 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## 2. 제안이유

대가야읍 고아리 130-2번지 일원에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, 대가야시장 및 상업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인복지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『고령 군관리계획(주차장, 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』을 진행 중에 있으며,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 결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‘고령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’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위 치 :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130-2번지 일원
- 규 모 : 2,565㎡
- 계획의 내용
  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생산녹지지역(2,565㎡) → 제1종일반주거지역(2,565㎡)
  - 결정(변경)사유 : 군계획시설(주차장, 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
○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(안)의 내용

- 사업명 : 고령 군관리계획(주차장, 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
- 위치 :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130-2번지 일원
- 면적 : 2,179㎡(주차장 A=1,609㎡, 사회복지시설 A=570㎡)
- 사업기간 : 2021년 ~2024년(4년간)
- 사업비 : 59.6억원(국비 3.8억, 도비 5억, 군비 50.8억)
  - 주차장 : 19.6억원(국비 3.8억, 군비 15.8억)
    - ※ 토지매입비 12억원, 공사비 7.6억원
  - 사회복지시설 : 40억원(도비 5억, 군비 35억)
- 사업시행자 : 고령군수

○ 청취대상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)

-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
4.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 5항

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대가야시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혼잡 등이 유발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변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가 필요로 하며 또한, 관내 지역의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와 복지를 위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내 거주 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바, 두 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
  
- 하지만 사업 추진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 기본계획과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 주민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지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.
  
-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 관계법령 발취

##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

- 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①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-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, 2013.3.23.>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민"은 "지방의회"로 본다. <개정 2013.3.23.>
- 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>